제작 2022년 8월

행복 더하기, 복지 더하기

어르신 복지서비스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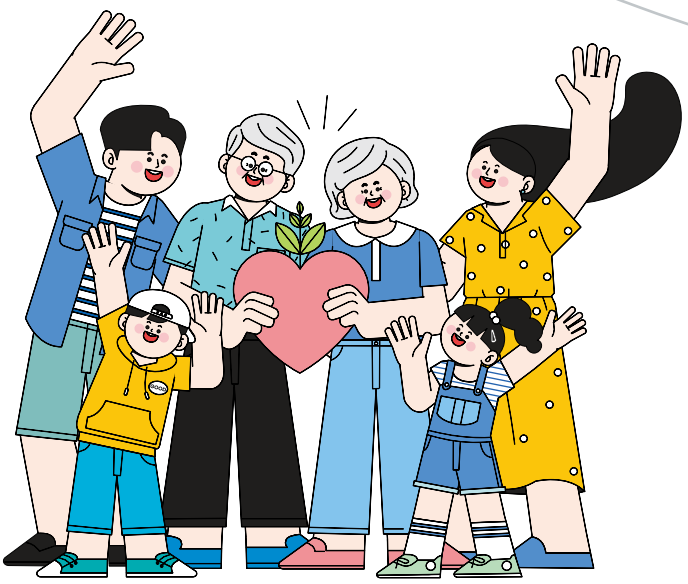

h·well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

목 차

생활지원

1. 기초연금제도
2. 요금감면제도
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지원

1.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2.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3. 노인 틀니 지원
4. 국가예방접종 지원
5.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6. 노인 눈 수술비 지원
7.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치매지원

1. 치매 조기검진 지원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4. 지문 등 사전등록제

1 기초연금제도

1.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

2. 내용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월180만원	월288만원
월 최대 지원 금액	307,500원	492,000원 (1인 246,000원)

3. 신청

· 방문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4. 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5. 기타

· 만 65세 미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반영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 산정 제외

2 요금감면제도

<table>
<tr><th>구분</th><th>대상</th><th>감면 내용</th><th>방법 및 문의</th></tr>
<tr><td rowspan="2">국민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td><td>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속한 가구</td><td>· 소득·재산요건 모두 충족 시
최대 30% 경감
<table><tr><td>구분</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r><tr><td>소득</td><td colspan="3">연 360만원 이하</td></tr><tr><td>재산
과표</td><td>6천만원
이하</td><td>9천만원
이하</td><td>1억3천
5백만 이하</td></tr><tr><td>경감</td><td>30%</td><td>20%</td><td>10%</td></tr></table></td><td rowspan="2">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td></tr>
<tr><td>만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가구</td><td>·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표 1억 3,500만원 이하 일
경우 30% 경감</td></tr>
<tr><td>교통비</td><td>만 65세
이상</td><td>·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td><td>· 이용시신분증제시
· 코레일
(☎1544-7788)</td></tr>
<tr><td></td><td></td><td>·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감면</td><td>· 이용시신분증제시
·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td></tr>
</table>

생활지원

2 요금감면제도

구분	대상	감면 내용	방법 및 문의
문화 활동비	만 65세 이상	· 무료입장 – 국·공립공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미술관, 고궁, 능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국·공립국악원	· 이용시신분증제시
이동통신 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부가세포함 최대 1만2,100원 감면)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방문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 통신사 대리점 · 온라인 * – 복지로, 정부24 · 유선 –통신사 고객센터(114)

* 복지로 : www.bokjiro.go.kr
정부24 : www.gov.kr

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 대상

· 아래 3가지 조건(①~③)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①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치매(또는 치매고위험군)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③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2. 내용

· 선정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3. 선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등의 대상자 추천 및 발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경기도 사업지역 :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 : 병원 치료일 및 누락일정 알림서비스
· 교육·상담 :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 의료비지원(65세 이상) : 매월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내)

3. 신청

· 사업지역 내 고혈압·당뇨병관리 지정 병·의원 및 약국에 등록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5. 기타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를 통해 등록 병·의원·약국인지 확인 필요

1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1. 대상

·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수준이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

<table>
<tr><th>기준</th><th>조건</th></tr>
<tr><td>질환</td><td>· 입원 : 모든 질환자
· 외래 :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 중증질환 : 암,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 뇌혈관, 심장 질환(일부질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td></tr>
<tr><td>소득</td><td>·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기준/2022년)
<table>
<tr><th>가구원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 이상</th></tr>
<tr><td>직장가입자</td><td>69,610원</td><td>116,780원</td><td>149,660원</td><td>182,740원</td><td>216,270원</td></tr>
<tr><td>지역가입자</td><td>14,730원</td><td>106,450원</td><td>146,850원</td><td>190,850원</td><td>233,460원</td></tr>
</table></td></tr>
<tr><td>재산</td><td>·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표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td></tr>
<tr><td>의료비 부담 수준</td><td>·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table>
<tr><th>소득 구간</th><th>본인부담의료비 부담수준</th></tr>
<tr><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td></tr>
<tr><td>기준중위소득 50% 이하</td><td>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td></tr>
<tr><td>기준중위소득 100% 이하</td><td>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td></tr>
</table></td></tr>
</table>

1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2. 내용

· 본인부담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 후 50~80% 차등비율 지원
· 질환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3. 신청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이 충족될 경우 신청 가능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지원도우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모의계산 가능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의료지원

2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

2. 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구분	건강보험	차상위 만성질환(E,F)	차상위 희귀난치(C)	의료급여2종	의료급여1종
본인 부담률	30%	20%	10%	20%	10%

3. 신청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신청서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신청서를 받은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의료급여수급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기타

· 완전무치악(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은 지원 제외
· 부분틀니와 중복해서 지원 가능

3 노인 틀니 지원

1. 대상

· 완전틀니 : 만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부담

구분	건강보험	차상위 만성질환(E,F)	차상위 희귀난치(C)	의료급여2종	의료급여1종
본인 부담률	30%	15%	5%	15%	5%

3. 신청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신청서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신청서를 받은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의료급여수급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국가예방접종 지원

1.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내용

구분	접종 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

3. 신청

·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지정 의료기관 찾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사이트(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4. 문의

·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 8399)

5. 기타

· 인플루엔자백신은 연령별로 접종일이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폐렴구균백신은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만 대상

5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C,E)인 원발성 암환자

2. 내용

·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연속 3년간 의료비 지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암진단, 치료,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 지원

3. 신청

·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5. 기타

지원 가능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6 노인 눈 수술비 지원

1.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안과적 수술 필요자
- 대상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사시, 각막이식 등

2. 내용

-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안구내주입술, 레이저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 신청 질환에 따라 지원금액 및 항목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3. 신청

- 보건소에 사전문의 후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5. 기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비급여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등) · 통원치료비 및 제증명료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진단서,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7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1.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무릎 인공관절수술 필요자

2. 내용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

3. 신청

-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5. 기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비급여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식대 등) · 통원치료비 및 제증명료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의료비

1 치매 조기검진 지원

1.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선별·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협약병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지원기준* 충족 시 협약병원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기준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4인 기준 월 614만 5천원)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대상	치매 진단받지 않은 자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	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내용	치매 인지선별 검사(CIST)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등	전문의 진찰, 뇌영상촬영, 진단의학검사,혈액검사 등
지원 내용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 협약병원 검사 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 지원	협약병원 규모에 따라 검사비 8만원 또는 11만원 한도 내 지원

3. 신청

·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2022년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234만	392만	504만	615만	723만

2.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치매약제비와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를 월 3만원 한도에서 실비지원

3. 신청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기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3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1. 대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내용

-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를 보급
-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3. 신청 및 문의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4 지문 등 사전등록제

1. 대상

- 치매환자, 장애인(지적·자폐·정신), 18세 미만 아동

2. 내용

-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

3. 신청

- 방문 :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온라인 : 안전드림 홈페이지(safe182.go.kr) 및 안전드림 앱

4. 문의

- 경찰청(☎182)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

1.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2. 노인학대 신고

- 노인학대를 알게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경찰서(☎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본 책자의 내용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서비스 이용 전 해당 서비스 문의처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